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24호 2020. 4. 8.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456호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2
- 정선군 공고 제2020-463호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8
- 정선군 공고 제2020-466호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456호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의 비전·목표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실질적 자문을 통해 군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 자문
 - 군정의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 주요 군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 회의 운영 (안 제7조)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 소집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군수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실 (우)26130
- ❖ 연락처 : 전화 560-2214 / 팩스 560-259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군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군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4.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수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이 된다.

③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분야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특정 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선군 공고 제2020-463호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2020.1.30.)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예산품의 전결기준액 및 재정합의 대상금액 등 세부기준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 당초 :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 변경 :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재무회계 규칙 재편
 - 지방자치단체 공통규정을 행정안전부훈령으로 존치, 자치단체 규칙에서는 삭제 (예산, 계약, 결산)
- 징수관·재무관의 직무위임범위 조정(안 제3조 ~ 제4조)
- 예산 품의 금액의 범위 조정(안 제5조)

구분		공사	용역·물품	기타	비고
현 행	실·과장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부군수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개정(안)	실·과장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부군수	5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회계과
- 전화 : 033-560-2274
- 팩스 : 033-560-2272
- 이메일 : minyo82@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portal/openadmin/adminnews/legislativenotice>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⑥ 규칙 제4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의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인 한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정선군 사무처리전결 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정선군 사무처리전결 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임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일상적인 계산업무를 벗어나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회계관리 사항은 이규칙에 다른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의 계산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전결사항) 제1항에 따른 별표 중 “실·과·소 공통사항 17” 중 “아. 예산집행품의(재무회계규칙 제21조 각항의 금액별)”을 “아. 예산집행품의(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함)”로 개정한다.

< 별표 1 >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	본 청	군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임 관	기획실장	-	-
징 수 관	부군수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	부군수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 괄 채 권 관 리 관	부군수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부군수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기획실장	-	-
통 합 지 출 관	회계과장	-	-
지 출 원	경리담당	의사담당	지출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 계 책 입 관	-	-	-
정 수 관	관서의 장	읍·면장	-
분 임 정 수 관	-	-	-
재 무 관	-	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 임 재 무 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	-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읍·면장	-
총 괄 부 채 관 리 관	-	-	-
부 채 관 리 관	-	-	-
총 괄 기 금 관 리 관	-	-	-
통 합 지 출 관	-	-	-
지 출 원	-	읍·면의 지출업무담당	-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서무 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서무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자	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비고 1. 0000담당 : 담당·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선군 보건소 2.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3.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4. 정선군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5. 정선군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6. 정선군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7. 정선군 신동읍 행정복지센터 8. 정선군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9. 정선군 남면 행정복지센터 10. 정선군 여량면 행정복지센터 11. 정선군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12. 정선군 임계면 행정복지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선군 보건소 고한사북지소 2. 정선군 신동읍 함백출장소

< 별표 3 >

예산집행 품의

관서	본 청	부군수	실·과장	비 고
본 청	공사 또는 토지매입	1건 추정금액 10억원 이하	1건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용역 또는 물품	1건 추정금액 5억원 이하	1건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기타 지출	1건 추정금액 2억원 이하	1건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 별표 4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회계과장)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1건마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1건마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전액 일상경비로 교부	
4. 민간위탁경비	1건마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1건마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1건마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합의 대상임.	
8. 기타 경비	1건마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 위의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각각 경리담당, 계약관리 담당과 협의 할 수 있다.

< 별표 5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기획실장)	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임.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정선군 공고 제2020-466호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도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법규 입법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의 조항 신설(안 제17조제3항)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실)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luissong8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회의운영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17조(회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u>